

임상치의학대학원 내규

제정 2006. 8. 1 개정 2024. 9. 1.
개정 2007. 3. 1
개정 2007. 9. 1
개정 2011. 3. 1
개정 2013. 5. 1
개정 2016. 5.26
개정 2016. 9. 5
개정 2017. 3.20
개정 2019. 9.16
개정 2020. 5.11
개정 2020.11.06
개정 2023. 1. 1
개정 2023. 8. 28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내규는 대학원학칙에 의거하여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교육목표) 본 대학원은 일반 치과의사, 의사, 의료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화된 학술적 이론과 치의학, 구강보건 의학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민 구강보건 및 치의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.

제 3 조(학과의 설치) 임상치의학대학원에 다음의 학과를 설치한다.
치과인공지능로보틱스학과, 임상치과교정학과, 구강보건의료학과

제 2 장 입 학

제 4 조(입학자격)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
1. 국내외 학사 학위 졸업예정자 및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
2.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대학원 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자

제 5 조(입학전형) ① 입학전형은 연 2회 이내에서 실시한다.

② 이 대학원에 입학할 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1. 입학원서
2. 대학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기타 그 자격을 인정하는 서류
3.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

4. 수학계획서

5. 재직 및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제 6 조(전형방법) 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실시한다.

② 서류전형의 평가 항목은 지원자의 학부 전공 관련성, 학부 성적, 실무경력으로 구성한다.

③ 면접전형은 지원자의 학문적 적성·인성, 수학계획 및 진로방향을 평가한다.

제 7 조(전형기준) ① 입학전형은 아래의 항목별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한다.

② 아래의 전형기준에 의해 취득한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전형에서 탈락한다.

구 분	서류전형			면접전형		계
	학부전공 관련성	학부성적	실무경력	학문적 적성·인성	수학계획 및 진로방향	
치과인공지능로봇스학과	10	20	10	30	30	100
임상치과교정학과	10	20	10	30	30	100
구강보건의료학과	10	20	10	30	30	100

제 8 조(입학전형위원회) ①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을 위하여 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.

② 입학전형위원회는 본 대학원 학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3 장 교과과정 및 학사관리

제 9 조(교과과정) ① 교과과정은 공통필수, 공통선택, 전공필수, 전공선택, 논문연구 과목으로 한다.

② 교과과정은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.

제 10 조(학과장) ① 본 대학원에는 각 학과마다 학과장을 둔다.

② 학과장은 임상치의학대학원장의 명을 받아 각 학과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
제 11 조(지도교수) ① 본 대학원에는 학생별로 지도교수를 둔다.

② 지도교수는 학생의 수학 및 연구(논문)과제 선택 등의 지도를 담당한다.

③ 지도교수의 선정은 입학 후 1학기 이내에 한다.

④ 지도교수의 변경은 선정 후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. 부득이한 경우 1년을 경과한 후라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.

제 12 조(이수과목의 선택) 이수과목의 선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13 조(시험) 학기말 시험은 매 학기 각 과목별 총 시간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한 학생에게 시험 자격을 인정한다.

제 14 조(학점인정) ① 학생의 수강과목별 출석이 강의와 실습시간의 3분의 2 이상이고, 학업성적이 C등급 이상이면 이수학점에 가산된다.

② 입학전에 국내외의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대학원 학점인정신청서<서식 1>를 입학후 1달 이내에 제출하여 임상치의학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교내의 타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, 임상치의학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수할 수 있다.

제 15 조(공개강좌) ① 본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.

② 공개강좌는 직무, 교양, 학식,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하고, 공개강좌의 제목, 시간, 수강정원, 장소,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.

③ 공개강좌 수강자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 4 장 장 학 금

제 16 조(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내용) 이 대학원의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재학성적우수장학금 : 재학중 성적우수학생에게 아래의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다.

가. 자 격 : 직전학기 6학점 이상취득, 평점평균이 4.0 이상, 정규등록 학생

나. 범 위 : 직전학기 정규 등록생의 10% 이내로 하되, 이를 학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다. 동점우선처리 : 취득학점이 많은 학생, 총점이 높은 학생

2. 조교장학금 : 조교로 임용된 자에게 별도의 조교임용규정에 따라서 지급한다.

3. 외부장학금은 교외에서 유치한 장학금으로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서 지급한다.

4. 재단산하교직원학비감면 :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일송학원 산하 의료원 및 학교,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교·직원에게는 수업료의 50%를 감면해준다.

5. 면허증소지자장학금 :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 면허증소지자는 각 학기 수업료의 30%를 감면한다.

6.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과의사는 입학 시 각 학기 수업료의 40%를 감면한다.

7. 내부장학금의 경우 중복지급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17 조(장학생의 자격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 후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

1. 복학

2. 재입학

3. 징계(유기정학 이상) 해제

4. 기타 학칙 위반자

제 18 조(장학금 지급 유효기간) 장학금 지급 유효기간은 해당학기에 한한다.

제 5 장 학위청구 논문 제출자격시험

제 19 조(외국어시험)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한다.

② 외국어 시험은 매 학기초 30일 이내에 시행한다.

제 20 조(종합시험)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종합시험은 전공과목으로 한다.

② 종합시험은 매 학기초 30일 이내에 시행한다.

제 21 조(응시자격) ① 외국어시험은 2회 등록 후부터 응시할 수 있다.

- ② 종합시험은 전공교과목을 16학점이상 취득하고,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.
 - ③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.0 이상이어야 한다.
- 제 22 조(응시절차 및 방법) 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된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종합시험으로 지정된 교과목 중 학기별로 원하는 교과목을 나누어 응시할 수 있다.
 - ③ 학위과정 수료 후 학생이 외국어시험이나 종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 23 조(출제 및 평가) ① 시험출제 위원은 해당학과 담당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상치의학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- ② 배점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, 과목당 합격을 인정한다.
 - ③ 불합격한 과목은 다음 학기나, 과정수료 후 재 응시할 수 있으며 해당 시험 응시절차에 따른다.
- 제 24 조(학위과정 수료자의 등록금 환불)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논문지도 등록의 이유로 수료 후 등록을 하고, 외국어시험이나 종합시험을 응시하여 통과하지 못한 경우 등록금을 환불한다.

제 6 장 학위청구논문

제 1 절 논문지도

- 제 25 조(논문지도과정 절차) 논문지도과정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.
1. 논문지도신청서 제출 : 간략한 구상
 2. 논문지도교수배정
 3. 논문지도
 4. 학위논문작성계획서 제출
 5. 학위논문작성계획서 공개발표
- 제 26 조(논문지도 신청자격) 전공교과목 16학점 이상을 이수한 후 논문지도를 받을 수 있다.
- 제 27 조(논문지도 신청) ① 논문지도 신청자격을 갖춘 학생은 논문구상을 하여 학위논문 지도신청서 I [서식2]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석사과정을 수료한 학생이 논문지도를 받고자 할 경우 또는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초 논문지도등록을 하고 학위논문지도신청서 II [서식3]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 절 논문심사

- 제 28 조(논문심사 절차) 학위청구논문심사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.
1.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

2. 논문심사위원회 구성
3. 예비심사
4. 본 심사 및 구술시험

제 29 조(논문심사 신청자격)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으려면 아래의 모든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해당학기에 전공수료학점 이수 예정
2. 직전학기 평균평점 3.0이상
3. 외국어시험 합격
4. 종합시험 합격

제 30 조(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) ① 학생은 해당학기 2개월 이내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위 청구논문 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학위청구논문 심사희망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석사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서[서식 4] 1부
2. 석사학위청구 논문심사 추천서[서식 5] 1부
3. 석사학위청구논문 4부.

제 31 조(논문심사위원회) ① 임상치의학대학원장은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의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한다.

② 위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의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담당한다.

③ 임상치의학대학원장은 논문심사위원 중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명한다. 다만, 위원장은 심사에 있어서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.

제 32 조(논문의 심사)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나누어 실시하되 본심사는 구술시험을 병행한다.

제 33 조(예비심사) ① 예비심사는 서면심사로 하고 비공개로 실시한다.

② 예비심사는 논문제출자의 연구태도, 논문의 주제와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연구성과 등을 엄밀히 심사하고 수정·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한다.

③ 심사위원은 석사학위논문 예비심사요지[서식 6]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.

④ 예비심사의 판정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합격으로 한다.

⑤ 심사위원장은 석사학위논문예비심사 결과통보서[서식 7]에 심사위원들의 예비심사요지를 첨부하여 논문지도교수에게 통보하고, 임상치의학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⑥ 논문지도교수는 논문 제출자에게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논문의 수정·보완 사항을 지시하여 논문을 수정한 후 본심사에 제출하도록 지도한다.

제 34 조(본 심사 및 구술시험) ① 본 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수정·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논문의 내용과 체계상으로 결함이 있는가를 심사한다.

② 구술시험은 본심사와 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에 대하여 논문에 관련된 구술시험을 행한다.

③ 심사위원들은 석사학위논문 심사요지[서식 8]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.

④ 논문심사의 판정은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합격으로 하고, 구술시험은 100점 만점으로

하여 평균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
제 35 조(심사결과 보고) ① 심사위원장은 해당 학기의 지정된 기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, 석사 학위논문 심사결과종합통보서[서식 9]에 심사위원들의 심사요지를 첨부하여 임상치의학대학원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임상치의학대학원장은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결과를 임상치의학대학원 학사위원회에 보고 하고 합격자에 대한 학위수여여부를 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써 결정한다.

제 36 조(학위논문의 제출) 본 심사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정된 기일 내에, 정한 양식에 따라 제본된 논문 4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37 조(논문지도수당) 논문지도교수에게 소정의 논문지도 수당을 지급한다.

제 7 장 졸업시험

제 38 조(응시자격) ① 졸업시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.

1. 4학기이상 정규 등록
2. 최종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32학점 이상 취득
3. 외국어시험 합격

②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.0 이상이어야 한다.

제 39 조(응시절차) 졸업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정된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제 40 조(시행일자) 매년 5월과 11월에 시행한다.

제 41 조(실시방법) ① 졸업시험은 학과별 전공과목 중에서 출제하되,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상치의학대학원장이 정한다.

②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
③ 시험 출제 위원은 해당 학과 담당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상치의학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
제 8 장 외래교원 위촉

제 42 조(정의) 외래교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임상치의학대학원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사를 지칭한다.

제 43 조(자격) ① 임상치의학대학원 외래교원의 직위는 다음의 자격기준에 따라 외래교수, 외래 부교수, 외래조교수, 외래전임강사로 구분한다.

1. 외래교수 : 대학졸업후 1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
2. 외래부교수 : 대학졸업후 11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
3. 외래조교수 : 대학졸업후 7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
4. 외래전임강사 : 대학졸업후 4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

② 전항의 자격에 미달되는 사람이라도 총장이 자격을 인정할 경우에는 위촉할 수 있다.

제 44 조(위촉) ① 외래교원은 매 학기초 임상치의학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상치의학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외래교원의 추천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이력서 1부.

2. 학과장 추천서 1부.

제 45 조(위촉기간) ① 외래교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② 외래교원의 위촉기간 만료 후 재 위촉이 없으면 자동 해촉 된다.

제 46 조(보수) 외래교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변경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심미수복치의학과 재적생으로서 2007년 3월 1일 이후 재적 및 졸업하는 학생은 심미수복보철학과에 재적 및 졸업하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 이 변경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심미수복보철학과 재적생으로서 2007년 9월 1일 이후 재적 및 졸업하는 학생은 임프란트보철학과에 재적 및 졸업하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 이 변경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과 재적생으로서 2011년 3월 1일 이후 재적 및 졸업하는 학생은 치과임프란트학과에 재적 및 졸업하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변경 내규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이 변경 내규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임프란트보철학과 수료생으로서 2016년 6월 1일 이후 졸업하는 학생은 치과임프란트학과에서 졸업하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변경 내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변경 내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변경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변경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변경 내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변경 내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이 변경 내규는 202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치과임프란트학과 재적생으로서 2023년 8월 28일 이후 졸업하는 학생은 치과인공지능로보틱스학과에서 재적 및 졸업하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 내규는 2024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.